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

(Roman Investment Free Guideline and Process)



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

제1조(목적)

본 기준 및 절차는 "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"(이하 "법"이라 한다.) 제58조에 의거하여 ㈜ 로만자산운용(이하 "회사"라 한다)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고하고,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의부과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 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 규칙 등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기본수수료의 부과기준)

기본수수료는 펀드별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. 다만, 고객과의 사전 협의로 이와 다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.

수수료 부과에 있어 적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성과수수료의 부과기준)

성과수수료는 펀드별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. 다만, 고객과의 사전 협의로 이와 다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.

수수료 부과에 있어 적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수수료의 부과 절차)

- ① 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, 규모,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계약 기준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.
- ②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 권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- ④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운용기간 중 인상 등의 이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집

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혹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설명의무)

회사는 법 제4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7조(공시 등)

- ①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규정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게 한다.